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9일

가정2동장 이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곽 *리	곽 *리 1998-08-03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(가정동)	직권말소 2025-11-19